

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3.01.01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3시간 미만	30,900 원	28,610 원	26,410 원	25,210 원	24,000 원	24,000 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8,630 원	35,760 원	33,010 원	31,510 원	30,000 원	30,000 원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1,780 원	47,960 원	44,270 원	42,770 원	41,240 원	41,240 원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4,400 원	59,660 원	55,080 원	53,580 원	52,050 원	52,050 원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70,950 원	65,720 원	60,720 원	59,190 원	57,690 원	52,050 원
13시간 초과	76,080 원	70,480 원	65,110 원	63,600 원	62,100 원	52,050 원

○ 주야간보호(치매전담실)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3시간 미만	0 원	35,980 원	33,220 원	31,700 원	30,180 원	30,180 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0 원	44,980 원	41,520 원	39,620 원	37,730 원	37,730 원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0 원	60,330 원	55,680 원	53,800 원	51,880 원	51,880 원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0 원	75,060 원	69,280 원	67,400 원	65,470 원	65,470 원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0 원	82,690 원	76,380 원	74,440 원	72,550 원	65,470 원
13시간 초과	0 원	88,640 원	81,920 원	80,000 원	78,100 원	65,470 원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885,000 원	1,690,000 원	1,417,200 원	1,306,200 원	1,121,100 원	624,600 원

- 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- 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- ※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(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)

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3.01.01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885,000 원	1,690,000 원	1,417,200 원	1,306,200 원	1,121,100 원	624,600 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190 원	150분 이상	46,970 원
60분 이상	23,480 원	180분 이상	52,880 원
90분 이상	31,650 원	210분 이상	58,930 원
120분 이상	40,280 원	240분 이상	65,000 원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2,16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4,07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6,250 원

○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15분 이상 30분 미만	39,440 원
30분 이상 60분 미만	49,460 원
60분 이상	59,500 원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 %
기초수급권자	0 %
기타 의료수급권자	6 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 % , 6 %